

<붙임 1>

상호의 변경 보고

※ 법 제418조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시 작성한다.

1. 변경내용-변경전후의 상호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
상 호	주식회사 더채움파트너스	주식회사 더채움자산운용

* 외국어 문자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기재

2. 변경사유 : 2025.08.11.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완료로 인한 상호변경

3. 변경일 (등기일) : 2025.08.18

■ 첨부서류

변경후 상호를 등기한 경우 상호의 등기부등본 1부